

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광성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행 조례에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, 현 위원회 구성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

이에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며, 위촉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 및  
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

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 
임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 
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